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3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 조정으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2022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2022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2,844백만원에서 3,408백만원으로 564백만원 증가함.
- 나. 서울광역자활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실집행잔액(발생이자) 등 반영으로 「기타수입」 금액이 당초 48백만원에서 73백만원으로 25백만원 증가 및 추가 상환계획(점포 90백만원, 매입임대 653백만원)에 따른 「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」 금액이 당초 299백만원에서 1,042백만원으로 743백만원이 증가함.
- 다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예치금」(재무활동) 금액이 당초 2,508백만원에서 3,840백만원으로 1,332백만원 증가하여 53.1% 변경되었음.

## 라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# 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3,310	4,642	1,332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299	1,042	743
이자수입	119	119	-
기타수입	48	73	25
예치금회수	2,844	3,408	564

#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계	3,310	4,642	1,332	
정책사업비	비용자업	597	597	-
	용자성업	200	200	-
행정운영경비	기경본비	5	5	-
재무활동	예치금	2,508	3,840	1,332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(☎ 2133-7559)